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지난 2014. 12. 23. 빅데이터의 처리·활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1. 빅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최초의 가이드라인

실시간,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대규모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빅데이터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경제적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가산업정책 상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빅데이터 처리기술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보주체의 성향과 행위를 예측하고 단독으로는 식별력이 없는 정보들을 결합·분석하여 식별력 있는 정보를 만들어 내는 프로파일링(profiling) 기술 등이 발전함에 따라 그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주체의 사전 동의(Opt-In)를 받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빅데이터 산업의 특성상 사전 동의 방식의 데이터 수집·처리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규제 불확실성에 처해 있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도 제대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본 가이드라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사업자가 ‘공개된 개인정보 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발생하는 이용내역정보 등을 수집·저장·조합·분석 등 처리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오·남용 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관련 법령 하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식별 정보에 대한 철저한 ‘비식별화’ 조치(제3조, 제4조, 제5조 등)

본 가이드라인은 공개된 정보 및 이용내역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수집시부터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마스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그와 같이 비식별화 조치를 한 경우, 사업자 등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이용하고(제4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제10조), 이용자가 거

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의 서비스 제공업무 수행을 위해 내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9조). 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업자의 빅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위한 이번 가이드라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3. 빅데이터 처리 사실·목적 등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제4조, 제5조, 제6조)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부지불식간에 수집되고 활용될 가능성이 상존하여 정보 주체가 자신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가능성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개된 정보와 이용내역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그 처리사실, 수집출처 및 목적과 함께 그로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된 새로운 정보가 생성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처리 방법을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는 경우 이용자 등의 요구가 있으면 수집 출처, 처리 목적과 함께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재식별시, 즉시 파기 및 비식별화 조치(제3조, 제6조)

비식별 처리된 공개된 정보 및 이용내역 정보를 처리하여 생성한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재식별 될 경우, 사업자 등은 이를 즉시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5. 민감정보 및 통신비밀의 수집·이용·분석 등 처리 금지(제7조, 제8조)

이용자로부터 따로 동의를 받지 않는 한 특정 개인의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등 민감정보의 생성을 목적으로 한 정보처리 및 전송 중인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통신 내용에 대한 정보처리는 금지됩니다.

6. 수집된 정보의 저장·관리 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시행(제3조 제2항)

사업자 등은 비식별화 조치가 취해진 정보라 하더라도, 정보를 저장·관리하고 있는 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를 설치하고, 접속기록에 대한 위변조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악성프로그램에 의한 침해 방지 조치 등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7. 맺음말

본 가이드라인은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하에서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 간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인터넷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자는 비식별화 등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한편, 저장·보관하는 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 윤종수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040 | E-Mail. jsyoon@shinkim.com |
| ● 강현정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080 | E-Mail. hjkang@shinkim.com |
-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http://www.shinkim.com>